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시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에게도 통지 필요〉

■ 홍영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54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홍영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3. 11. 13.

다. 회 부 일 : 2023.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를 제약하고 있음.

이에 「세무사법」상 현행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Ⅲ. 검토의견

1.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대상에 세무사 추가(홍영표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81조의7①) ○ 통지대상 - 납세자(혹은 납세관리인) ○ 통지시기: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 ○ 통지사항: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대상에 세무사 추가 규정 ○ 통지대상 - 납세자(혹은 납세관리인), -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라 통지받아야 하는 세무사(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 ○ 통지시기: (좌 동) ○ 통지사항: (좌 동)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홍영표의원안 2023. 11. 13. 제출(의안번호 25354)

☐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서·신청서·청구서(이하 “신고서 등”이라 함)를 대리로 작성하여 제출한 세무사(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7¹⁾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에 현행 납세자에 더하여 신고서 등을 대리로 작성하여 제출한 세무사(이하 “신고대리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세무조사 결과 신고서 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어 「세무사법」 제17조²⁾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대리 세무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납세자에게 민사상 변상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사의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라 신고대리 세무사에게도 함께 사전통지하도록 하면, 납세자가 별도로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해당 세무사가 관련 신고서 등을 미리 점검·검토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편익이 있음.

셋째, 세무조사는 신고서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상당 수반됨³⁾

2)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

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고대리 세무사에게 사전통지 되지 않는 것은, 신고서 등 조사 시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통지 하도록 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10조⁴⁾와 상충되므로 이를 보완·정비하기 위한 측면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⁵⁾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무조사는 과거 5년⁶⁾간의 장부 및 증거서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의 기간만 신고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세무사에게 보다 포괄적인 기간을 포함하는 세무조사 착수사실이 통보되는 것은 납세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⁷⁾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⁸⁾.

둘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대리와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⁹⁾, 개정안에 따라 신고대리 세무사에게 사전

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

4) 「세무사법」

제9조(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5) 한국세무사회 의견임.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7)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바132 전원재판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 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8) 세정일보, “세무대리인에 ‘조사통지’ 개정안…변호사·회계사보다 우위에 서는 ‘세무사’”(2023.11.21.)

9)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법적 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대리 업무 다수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사 직역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역보다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먼저 인지하게 되어 세무조사 대리 수임 영업 등에 있어 유리해진다는 의견이 있음¹⁰⁾.

셋째,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라 세무사에게 통지하는 조사¹¹⁾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¹²⁾와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사전통지 대상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임.

넷째, 신고서 등을 대리 작성한 모든 세무사 등을 파악하여 사전 통지하는 데 적지 않은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음. 참고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5,026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됨¹³⁾.

10) 세정일보, “세무대리인에 ‘조사통지’ 개정안…변호사·회계사보다 우위에 서는 ‘세무사’”(2023.11.21.)

11)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른 조사는 신고기한 종료 후 신고내용 중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해명을 받거나 수정신고를 안내하기 위한 “신고내용 확인조사”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와 구분된다는 것임.

12)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2023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세무조사 현황
2018년: 16,306건, 2019년: 16,008건, 2020년: 14,190건, 2021년: 14,454건, 2022년: 14,174건

IV. 입법의 재정영향

동 개정안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함께 제출되지 아니함.

문 의 처
02)6788-5161